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-21호

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제1항에 따라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11년 6월 17일

우정사업본부장

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

1. 위탁법인 :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지원단

2. 위탁업무

가. 국내·외 우편 관련 시장의 조사·분석

나. 우편상품의 개발 및 그 부대사업